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2. 5. 송재봉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 2.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1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5.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 상정, 소위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송재봉의원)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
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정부에 대하여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악화의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선별과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상호 간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사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체계를 사전 예방적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관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요건이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정책기관별로 지원수준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임. 이로 기준, 범위 및 선별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